

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24
----------	-----

제출일자 : 2008. 10. 8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1. 제안사유

- 가.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,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의 보완을 통하여
- 나. 주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의 정립 및 국민화합 도모
- 다. 2005.12.30 사하구 복무규정 제18조, 제26조가 삭제되었으나, 사하구복무규정내에는 제18조, 제26조가 연계되어 쓰여지고 있어 개정.

2. 주요골자

-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 명시(안 제5조제3항 신설)
- 「부산광역시사하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」 내 2005.12.30 삭제된 제18조 및 제26조를 근거로 하고 있는 관련조항 수정(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적용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공무원법」 제51조(친절·공정의 의무) 및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(연가일수및연가보상비의 지급), 「부산광역시 공무원복무조례」 제12조(연가계획 및 허가)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없음
- 라. 입법예고 : 해당없음
- 마. 기 타 : 복무조례안 시달(부산광역시 총무담당관-13597(2008.9.10)호)

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제 호

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친절, 공정”을 “친절”로 한다.

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

제19조제2항 중 “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”을 “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(이하 “규정”이라 한다)제7조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연가일수가 5일”로 하고 “다만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다만”으로 한다.

제19조제5항 중 “제18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규정 제7조제1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21조제1항 각 호외 부분 중 “1”을 “어느하나”로 “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20조제4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23조제5항 중 “제18조”를 “규정 제7조제1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친절,공정)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,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, <u>친절,공정하고</u> 신속·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제19조(연가계획 및 허가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<u>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</u>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년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.</p> <p><u>다만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</u> 공무원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③ ~ ④ (생략)</p> <p>⑤ 공무상 <u>제18조의 규정에 의한</u>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.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.</p> <p>⑥ (생략)</p>	<p>-----제5조(친절,공정)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,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, <u>친절</u>하고 신속·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</u></p> <p>제19조(연가계획 및 허가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「<u>지방공무원 복무규정</u>」(이하 “<u>규정</u>”이라 한다)<u>제7조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연가일수가 5일</u>-----.</p> <p><u>다만</u> -----</p> <p>-----.</p> <p>③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----<u>규정 제7조제1항에 따라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⑥ (현행과 같음)</p>